



보도	2024.5.31.(금) 조간	배포	2024.5.30.(목)
담당부서	회계감독국 금융회계팀	책임자	국장 이 석 (02-3145-7750)
		담당자	팀장 정주은 (02-3145-7970)

2023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 주요 내용 -

◆ '23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97.5% (2,537사)로 新외감법 시행 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非적정'인 기업은 2.5% (65사)로, '계속기업 불확실성', '종속·관계기업', '기초 재무제표' 등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 ✓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이라도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경우는 98사 (3.9%)입니다.

◆ '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도 97.3% (1,544사)로 전기 (97.5%, 1,472사)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非적정'인 기업 (2.7%, 43사) 중 중요한 취약점은 주로 '손상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공정가치 평가 (금융상품) 등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미비에서 지적되었습니다.
- ✓ 경영진·감사기구 는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내부회계 운영실태·평가 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과 이에 대한 시정 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

[정보이용자 유의사항]

- 1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경우 감사의견이 적정이라도 위험이 크므로 투자 의사 결정 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 평가 이슈가 있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 감사의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 3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非적정'인 경우 운영실태·평가보고서(사업 보고서 첨부)에 시정 계획 기재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I 재무제표 감사의견

- ◆ '23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 (2,602사) 의 97.5% (2,537사) 로 예년 수준을 유지
- ◆ '적정 의견'이라도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이 98사 (3.9%) 포함되어 있어 정보이용자의 주의 필요
- ◆ '非적정' 의견 (65사) 은 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 '종속·관계기업', '기초 재무제표', '특수관계자 거래' 등과 관련된 이슈로 발생

1 재무제표 감사 적정 의견

- (개황)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 (2,602사*) 의 97.5% (2,537사) 로 新 외감법 시행 이후 큰 변동 없이 97% 수준 유지**

* '23년 중 결산일이 도래하는 상장법인 중 외국기업 등을 제외

** 적정의견 비중(%) : ('19) 97.2 → ('20) 97.0 → ('21) 97.2 → ('22) 97.9 → ('23) 97.5

- (시장별) 코스피 (98.1%), 코스닥 (97.3%), 코넥스 (96.0%) 順
- (규모별) 규모에 비례하여 2조 원 이상이 99.5% (非적정 태영건설 1사)로 가장 높고, 1천억 원 미만이 96.1% 로 가장 낮음

'23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 상장법인 현황 (단위 : 사, %)

구 분	시장별			규모별				합 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2조원 이상	2조원~5천억원	5천억원~1천억원	1천억원 미만	
적정 의견 (적정 비중)	793 (98.1)	1,624 (97.3)	120 (96.0)	199 (99.5)	339 (99.4)	1,046 (97.8)	953 (96.1)	2,537 (97.5)

- (계속기업 불확실성) 적정 의견 기업 이라도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경우가 98사 (3.9%) 에 달함

* 감사인은 계속기업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적절히 공시된 경우 적정의견을 표명하면서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라는 별도 단락을 포함해야 함

- 이는 감사의견과 관계없이 투자 위험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므로 정보이용자들은 유의할 필요

* '22년에 '적정 의견'을 받았으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사(85사)의 25.9%가 '23년에 '비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이는 미기재 기업 (1.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

2

재무제표 감사 非적정 의견

-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非적정' 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 (2,602사)의 **2.5% (65사)**로 전기 (2.1%, 53사) 대비 소폭 증가 (0.4%p ↑, 12사 ↑)
- (의견별) '의견 거절' 기업은 **57사**로 전기(46사) 대비 **11사** 증가했고, '한정'은 **8사**로 전기(7사) 대비 **1사** 증가

'23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非적정 상장법인 현황 (단위 : 사, %)						
구 분	'23년(A)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22년(B)	증감(A-B)
의견거절	57	12	40	5	46	+11
한 정	8	3	5	-	7	+ 1
합 계 (非적정 비중)	65 (2.5)	15 (1.9)	45 (2.7)	5 (4.0)	53 (2.1)	+12 (+0.4)

- '23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非적정 기업 (65사) 중 **21사 (32.3%)**는 '22년 감사의견도 非적정으로 **2년 연속 非적정**에 해당
- (사유별) '계속기업 불확실성 (21.6%, 33사)'이 가장 많았고, 감사범위 제한과 관련해서는 '종속·관계기업 (14.4%, 22건)', '기초 재무제표 (10.5%, 16건)', '특수관계자 거래 (7.8%, 12건)' 등이 다수

재무제표 감사의견 非적정 사유 ¹⁾ (단위 : 건, %, %p)			
非적정 사유 ²⁾	'22년(A)	'23년(B)	증감(B-A)
• 계속기업 불확실성	27 (23.5)	33 (21.6)	+ 6 (Δ1.9)
• 감사 범위 제한	88 (76.5)	120 (78.4)	+32 (+1.9)
- 종속·관계기업 손상 등	12 (10.4)	22 (14.4)	+10 (+4.0)
- 기초 재무제표 ³⁾	15 (13.0)	16 (10.5)	+ 1 (Δ2.5)
- 특수관계자 거래	7 (6.1)	12 (7.8)	+ 5 (+1.7)
- 투자·자금거래 (CB 등)	12 (10.4)	11 (7.2)	Δ 1 (Δ3.2)
- 임원 횡령 등 회계부정	5 (4.3)	8 (5.2)	+ 3 (+0.9)
- 내부 통제 미비	6 (5.3)	6 (3.9)	- (Δ1.4)
- 기 타 ⁴⁾	31 (27.0)	45 (29.4)	+14 (+2.4)
합 계	115 (100.0)	153 (100.0)	+38

* 1) 괄호 안은 당해 연도 非적정 사유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2) 非적정 사유가 다수이면 중복 계산

3) 전기 감사의견이 非적정(14사) 이거나, 당기 횡령 발생(2사)으로 기초 재무제표 신뢰성이 미흡

4) 재고자산, 매출, 금융자산 평가, 기타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감사증거 미확보 등

II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 ◆ '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이하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 (1,587사)의 97.3% (1,544사)로 전기 (97.5%) 와 유사
-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非적정'인 상장법인은 총 43사 (2.7%) 로 '의견 거절 (감사범위 제한)' 26사와 '부적정 (중요한 취약점 존재)' 17사로 구성
- ◆ 부적정 (17사) 상장법인의 경우 '손상·공정가치 평가·대손 설정' 등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내부 통제나, '자금 거래'와 관련된 부정 예방·적발 통제 등이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

1 내부회계 감사 적정 의견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 (1,587사*) 의 97.3% (1,544사) 로 전기(97.5%) 와 유사

* 내부회계 감사 대상 : ('19) 자산 2조 원 이상 → ('20) 5천억 원 이상 → ('22) 1천억 원 이상, 검토 대상인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법인과 운영 예외 회사(종업원수 6인 미만) 등은 제외

- (시장별) 코스피 (97.5%) 기업의 적정 비중이 코스닥 (97.1%)을 소폭 상회하나 격차는 0.4%p로 미미
- (규모별) 규모에 비례하여 2조 원 이상의 적정 비중이 99.5%로 가장 높고, 5천억 원 미만이 96.3%로 가장 낮음

'23년 내부회계 감사의견 적정 상장법인 현황 (단위 : 사, %)

구 분	시장별			규모별				합 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2조원 이상	2조원~5천억원	5천억원~1천억원	1천억원 미만	
적정 의견 (적정 비중)	730 (97.5)	808 (97.1)	6 (100.0)	198 (99.5)	334 (99.1)	980 (96.7)	32 (84.2)	1,544 (97.3)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 '23년 최초 시행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 경우 대상기업 (181사)* 중 1사 (태영건설,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의견 거절) 를 제외하고 모두 적정 의견

* 연결 내부회계 감사 대상 : ('23) 자산 2조 원 이상 → ('29) 5천억 원 이상 → ('30) 전체

- ☞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형법인 (자산 2조원 이상) 부터 단계적 시행하였고, 시행 시기도 유예*함에 따라 큰 어려움 없이 안착 중인 것으로 평가

* 연결 내부회계 시행 1년 유예 ('22년→'23년), 별도 신청법인은 2년 유예

2

내부회계 감사 非적정 의견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非적정' 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 (1,587사) 의 **2.7% (43사)** 로 전기 (2.5%, 38사) 대비 소폭 증가 (0.2%p ↑, 5사 ↑)
- (의견별) '부적정 (중요한 취약점 有)' 은 17사로 전기 대비 3사 감소했고, '의견 거절 (감사 범위 제한)' 은 26사로 8사 증가

'23년 내부회계 감사의견 非적정 상장법인 현황 (단위 : 사, %)						
구 분	'23년(A)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22년(B)	증감(A-B)
부 적 정	17	9	8	-	20	Δ3
의견거절	26	10	16	-	18	+8
합 계 (非적정 비중)	43 (2.7)	19 (2.5)	24 (2.9)	- (-)	38 (2.5)	+5 (+0.2)

- (중요한 취약점*)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17사의 감사인은 특정한 '내부통제 미비'로 인하여 '중대한 회계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 재무제표 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 또는 적시에 적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

-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의 손상,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채권 대손 설정 등 '평가' 관련 통제 미비가 다수
- 자금거래 등 부정 예방·적발 통제 미비도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

◆ 내부회계 감사의견 부적정 기업의 중요한 취약점 예시

내부통제 미비	회계처리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상)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 여부를 평가하는 통제 활동이 비효과적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업 투자주식과 관련 손상차손 등이 부적절하게 기록될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통제 활동이 비효과적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손익 측정 공정가치 금융자산과 관련 평가 손익 등이 부적절하게 기록될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손) 관계기업 대여금 등의 회수가능액을 평가하는 통제가 비효과적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업 대여금과 관련 대손상각비 등이 부적절하게 기록될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거래) 인감 사용의 완전성·정확성을 검토하는 내부 통제가 비효과적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가 불완전하게 기록되거나, 우발상황이 부적절하게 공시될 가능성

3

경영진·감사기구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非적정'인 상장법인 (43사) 중에 경영진·감사기구가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기업은 9사 (20.9%), 이에 대한 '시정 계획'까지 공시한 기업은 8사 (18.6%)에 불과
- 유의 사항 배포 등을 통해 감사인이 지적한 중요한 취약점과 시정 계획을 마련·공시하도록 안내할 예정

◆ 경영진·감사기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보고 의무

-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었는지 평가하고, '운영실태 보고서 (사업보고서 첨부)'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이사회·감사기구에 보고
 - 중요한 취약점 등에 대한 적시 시정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실태보고서에 기재
- (감사·감사위원회)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평가하고 '평가보고서 (사업보고서 첨부)'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
 - 운영실태 보고서 상의 미비점 평가, 개선 조치의 적정성 및 이행현황 확인 등 포함

4

내부회계 감사의견과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교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非적정'인 상장법인 (43사)의 대부분 (29사)은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非적정'이나, 일부(14사)는 '적정' 의견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어도, 감사과정에서 회계오류를 적절히 수정한 경우 재무제표 적정 의견이 가능하나,
 - 회계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중요한 취약점을 시정·보완할 필요

'23년 내부회계 非적정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감사의견 (단위 : 사, %)

'23년 내부회계 감사의견 非적정		'23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非적정	의견거절	한정	적정
내부회계 부 적 정	17 (39.5)	6 (14.0)	3 (7.0)	3 (7.0)	11 (25.5)
내부회계 의견거절	26 (60.5)	23 (53.5)	23 (53.5)	- (-)	3 (7.0)
합 계	43 (100.0)	29 (67.5)	26 (60.5)	3 (7.0)	14 (32.5)

* 괄호 안은 전체 非적정 상장법인 (43사) 중 차지하는 비중

Ⅲ 회사 및 정보이용자 유의 사항

1 회사 유의사항

① (재무제표 非적정)

감사대비 충실히 자료를 준비하세요

✓ 계속기업 불확실성, 종속·관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 CB 등 투자·자금거래 등 관련 회계처리 및 주식 공시의 적절성 등을 사전 점검

※ 재무제표 非적정은 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 종속·관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 CB 등 투자·자금거래 등과 관련하여 지속 발생

② (내부회계 非적정)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세요

✓ 손상·평가·대손 관련 회계처리나 자금거래 등과 관련한 내부회계관리 제도가 회계오류 예방에 효과적인지 점검

※ 내부회계 非적정은 주로 손상·공정가치 평가·대손 관련 회계처리나 자금거래 등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로 발생

③ (경영진·감사기구)

중요한 취약점과 시정계획을 공시하세요

✓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감사인이 지적한 중요한 취약점과 이에 대한 시정 계획을 기재하고,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非적정'임에도 경영진·감사기구가 내부회계 운영실태·평가 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 및 시정 계획을 미기재한 상장법인이 다수

⇒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이 한국상장회사협회의 자율규정에서 「외감 규정 시행세칙」으로 이관 ('24년 시행) 됨에 따라 향후 기재 여부를 점검 예정

2 정보이용자 유의사항

①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의견 적정이라도 기재 여부를 확인하세요

✓ 감사의견은 적정이나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상장법인은 위험이 크므로 투자이사 결정 전에 반드시 확인

② (감사의견 非적정)

非적정 사유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지 검토하세요

- ✓ 재무제표 비적정 및 내부회계 비적정 사유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 감사의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 계속기업 불확실성, 종속·관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 손상·평가·대손 및 자금거래 관련 통제 미비 등

③ (중요한 취약점)

사업보고서에서 시정계획을 확인하세요

- ✓ 감사인이 지적한 중요한 취약점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유사한 회계오류가 재발할 수 있으므로, 내부회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사업보고서 첨부)에 시정 계획 기재 여부 등을 확인

※ 내부회계 감사의견은 '非적정'이지만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이 존재

IV 향후 계획

- 경영진·감사기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의 사항을 배포·안내
- 재무제표 비적정 사유, 내부회계 상 중요한 취약점 등을 회계 심사 테마 선정에 활용하는 등 회계오류 예방 및 적절한 회계처리 유도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보완하는 등 내부회계 감사제도 안착을 지속 지원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재무제표 감사의견)** 감사범위 제한 여부, 회계처리 기준 위배 여부, 계속 기업 존속 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한정·부적정, 의견거절**로 구분

구 분	적 정	한 정	부적정	의견거절
□ 감사 범위 제한 • 경 미 • 중 요 • 특히 중요	○	○ ²⁾		○ ³⁾
□ 회계처리 기준 위배 • 경 미 • 중 요 • 특히 중요	○	○ ²⁾	○ ³⁾	
□ 계속기업 가정 • 타당하나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 적절하게 공시 - 부적절하게 공시 • 타당하지 않음	○ ¹⁾	○ ²⁾	○ ³⁾ ○ ⁴⁾	

주: 1) 재무제표 주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별도 단락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 (감사기준서 570 문단 22)
 2) 그 영향이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 (감사기준서 705 문단 7, 감사기준서 570 문단 23)
 3) 그 영향이 중요하며 전반적임 (감사기준서 705 문단 8~9, 감사기준서 570 문단 23)
 4)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계속기업 가정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기준서 570 문단 21)

□ **(내부회계 감사의견)** 중요한 취약점 식별 여부, 감사범위 제한 여부 등에 따라 **적정, 부적정, 의견거절** 세 가지로 구분

※ 내부회계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는 별도로 작성되며, 공시되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별도 첨부

- **(적정)**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음
- **(부적정)**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중요한 취약점의 영향 때문에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지 않고 있음
- **(의견 거절)**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므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음